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320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0.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0.22

contact@bokjjim.com

# 복 정 동 야 시 장 정보공개서

(주)바이럴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바이럴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 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2층(복정동, 경인빌딩)

전화: 1522-3831 팩스: 031-722-383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22-383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 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 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복정동야시장외5	시장외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2층(복정동, 경영				
(주)바이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일 대표자 대표전		호	대표팩스번호
(ㅜ)미익글	2020.10.15	2020.10.22	김진기	1522-3831		031-755-2011
	법인등록번호	131111-06083	56 <b>사업</b> 지	다등록번호	1	85-87-0208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2층(복정동,				
대표이사	김진기	복정동야시장		경인빌딩)			
네표이시	급인기	외 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기	1522-3831	031-755-201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	57, 2층(복정동,		
HUIOLH	나스이	복정동야시장		경인빌딩)			
사네이사	사내이사 남승우	외 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기	1522-3831	031-755-201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2층(복정동,				
11110111	71 O XI	복정동야시장	경인빌딩)				
사내이사	김우진	외 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기	1522-3831	031-755-201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	57, 2층(복정동,		
71.1	저ㅂ여	복정동야시장		경인빌딩)			
감사	정보영	외 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기	1522-3831	031-755-2011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o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복정동야시장]이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복정동야시장	

상 호	복정동야시장 OO점	
상표(서비스표)	복정동 야시장	출원번호 : 제40-2021-0192826호
상표(서비스표)	サスなこ	출원번호 : 제40-2021-0160998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036,315	142,439	893,875	563,224	-1,063,629	-1,030,956
2022	2,397,280	1,137,384	1,259,896	2,941,272	-1,606,716	-1,632,292
2023	1,006,655	890,146	116,508	2,111,575	-1,163,692	-1,143,387

- o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o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어구	선언어구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김진기	대표이사	2020.10.~현재	(주)바이럴 대표이사	업무총괄			
가맹사업	남승우	사내이사	2023.10.~현재	(주)바이럴 사내이사	-			
관련임원	김우진	사내이사	2021.02.~현재	(주)바이럴 사내이사	-			
	정보영	감사	2021.02.~현재	(주)바이럴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ㅇ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의스/묘\
시점	상근	비상근	석전구(8)
2023년 12월 31일	2	2	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o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2021.01.07 ~ 현재	볶찜(등록번호: 20210019)이라는	
			2021.01.07 ~ 단세	영업표지의 찜닭사업 경영	
			2021.10.25. ~ 현재	복정동떡볶이(등록번호: 20211924)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2021.10.25. ~ 원제	영업표지의 주점사업(포차) 경영	
71 ml W W	( <del></del> )		2021.10.25. ~ 현재	직화로바베큐치킨(등록번호: 20213201)라는	
가맹본부	㈜바이럴		2021.10.23.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24년 02월부터)	
			2021.10.25. ~ 현재	강철부대찌개&철판닭갈비	
				(등록번호: 20213199)라는	
				영업표지의 부대찌개&철판닭갈비사업 경영	
			2023년 11월 ~ 현재	제육의달인(등록번호:20231495)이라는	
			2023년 11월 ~ 연제	영업표지의 제육볶음전문점 사업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o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복정동 야시장 (상표/서비스표)	해당 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출원 2021.09.17.	출원 4020210192826	김진기	-
与スまた <b>ルー人ノスと</b> (상표/서비스표)	있는 권한해당 해당 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21.08.04.	출원 4020210160998	김진기	-

- ㅇ 당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현재 출원 중이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o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Π. 가맹본부의 [복정동야시장] 가맹사업 현황
- 1. [복정동야시장]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 2. [복정동야시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바이럴	보정동야시장	부정동야시장 김진기 가맹계약 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35,
(구)마이글		검선기	없음	4층(복정동)
(주)바이럴	ᆸ저도아니자	김진기	가맹계약 체결사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복정동야시장	검인기	없음	2층(복정동, 경인빌딩)

## 3. [복정동야시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복정동야시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닭발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복정동야시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복정동야시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6. [복정동야시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건계	영호/이름	OH포시	등록번호	<u> </u>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바이럴	볶찜	20210019	한식	66/0	87/0	67/0
가맹본부	㈜바이럴	복정동떡볶이	20211924	분식	-	-	-
가맹본부	㈜바이럴	직화로바베큐치킨	20213201	치킨	-	-	1/0
가맹본부	㈜바이럴	강철부대찌개& 철판닭갈비	20213199	한식	-	-	-
가맹본부	㈜바이럴	제육의달인	20231495	한식	-	-	1/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m <sup>°</sup> 당	하한	면적 3.3m <sup>°</sup>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8.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ㅇ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복정동야시장]의 경우 당사의 [볶찜]지사에서 함께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부산경남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로64, 201호(백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5	곤	<u></u> 리 가맹점수	
부산경남	채홍충	<b>" (</b> 비まれ	<b>(1)</b>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	계약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	권한	수령권한	
	2023.11.02.~24.11.01	0	(	)	×	
	대구경북지사	경북 경신	시 백천동	로 63, 2013	호(백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대구경북	채홍충	デー ( <b><i>当</i></b>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	계약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3.11.02~24.11.1	0	(	)	×	
	제주지사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		녹차분재로 45 1층 1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제주	전윤봉	<b>デー (비まれ</b>	r)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	계약	가맹계약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	권한	체결권한	
	23.12.06~24.12.05	0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o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복정동야시장]외 5개 브랜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906,271	<b>경기</b> 도 (1006/10	(비공개)	
광고	기타	87/E WARRING	(비공개)	87/ <u>F</u> 909890	(비공개)	
판촉	기타	87/E PRODUCES	(비공개)	경기도 ************************************	(비공개)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ㅇ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ㅇ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도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o 귀하가 [복정동야시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7,7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금 성격의 금전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겨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상품·자재의 대금 모든 금전적 채무액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발생	l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9,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o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4,931	3,493.1			33㎡(10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19,800	1,980			
간판	협력업체	2,500		계약 또는	공사/공급 전	
주방기기	협력업체	9,208	920.8		공자/공급 전 계약취소	
주방집기	협력업체	1,423		물품입고 시	게듹귀소	
초도물품	협력업체	2,000				

- o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할 경우 당사의 디자인 노하우 제공비용 일금 일백일십만원(₩1,100,000, 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인테리어 공사 전 지급하여야 합니다.
- o 상기 금액에는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어닝, 외부닥트, 외부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맹본부가 설정한 기준(매뉴얼)에 맞추어 인테리어 등을 자체시공 하실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o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ㅇ 당사는 점포 선정 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ㅇ 귀하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또는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 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가맹점사업자	그 되다니 마시 그들 그 시스는무리 이번을 다음 그 이에 옷 시스의이시 이의 시 확이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 특별한 기준 없음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ㅇ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ㅇ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27.5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사용된 비용	
POS 기기	협력업체	월 22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분할납부
광고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 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 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ᆔᄎᆸᄗ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 내용별			할인비용,
판촉분담금	협력업체(미정)	부담	별도 공지	-	-	모바일상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영업표지 변경						있으며,
등에 따른 간판	가맹본부	협의	협의			교체비용은
비용 변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교체·보수 필요
시설, 각종,						시 시설, 기기
기기의 교체 및	해당업체	협의한 품목	협의			등의 내구연수
보수 비용	1061	해당금액	B-1			등을 감안하여
±1 -10						당사와 협의하여
				- 5		결정
			_ 0 0.	교육비	_	_ 0 _ 1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3일		교육 시행 후	교육 필요시
		, ,	이전	실시하지	반환 안됨	지급
				않은 경우		
고 · · · · · · · · · · · ·		가맹본부				VII. 가맹본부의
	가맹본부 또는	분담비용을				경영 및
비용	협력업체(미정)	제외한 나머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계약서상
			지급기일의			가맹점사업자는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다음날부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지체한
						경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o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ㅇ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품목대금 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o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청결,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ㅇ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SC 관리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상태를 조사	수시	문의: 해당 지역 지사
주문관리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시	수시	군의 애궁 시작 시작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o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고 탈퇴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처리하며, 본사의 귀책사유가 있을시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 양도에 동의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신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만일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대체수단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영위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o 귀하가 운영하는 복정동야시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받는 양수인이 당사에 최초교육비 [2,200]천원(vat포함)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2,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양수인이 잔존 계약기간의 양수 대신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5,500]천원(vat포함)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ㅇ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ㆍ원 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o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o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ㅇ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복정동야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o 별지를 참고 바랍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o 귀하가 [복정동야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복정동야시장	기재된 제품 이외는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문의 : 당사
등(※별지 판매	기세진 세품 이되는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품리스트 참조)	년에 출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1522-3831)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o 귀하가 위에서 제시한 별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소비자 이외의 다른 가맹점이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 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사전 서면 통지/본사승인	

ㅇ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발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음식점	복정동야시장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ㅇ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경우 가맹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1km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계약서	l 반영)	(계약서 반영)

※ 특수상권이라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 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 부 회신 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갱신

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ㅇ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복정동야시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 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ㅇ 당사는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 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ㅇ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ㅇ [복정동야시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 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0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0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3항
0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3항
0	복정동야시장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34조 3항
0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4조 3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6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7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2조 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3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C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	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C	가맹계약서 제33조 영업	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o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5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35조 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 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길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ul>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형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del>]</del> 나 35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빙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 o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o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 운영 기준을	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	
준수할 것	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	(1522-3831)
	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o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o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o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상속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 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상기 양수인의 지급비용과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o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동안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복정동야시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닭발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문의: 가맹본부
음식점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1522-383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ㅇ 당사는 복정동야시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연중무휴 또는 정해진 영업일	문의: 가맹본부(1522-3831)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비고
매뉴얼 준수, 위생, 재고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또는 관리표 작성 →	필요시	가맹본부	
원 · 부재료관리, 고객관리,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2표시	기하는도	
메뉴관리 등의 운영 상태	서명 → 완료			

ㅇ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o 당사는 [복정동야시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一下正	9T 94	본사	가맹점	군급 결사	비뽀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광고비의	계획 공고 → 가맹점	해당 지역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50%	50%	분담금 산정 → 분담금 통지 → 분담금 지급	(해당 지역의 지사가 본사부담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중시 → 正급급 시납	대체할 수 있다)
į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분담금 산정 → 분담금 통지 → 분담금 지급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의 경품 제공, 이벤트 (※사전통지행사에 따라 달라짐)

-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o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o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o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o 귀하는 [복정동야시장]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o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 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 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대략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 입지선정	필요 시 실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글프 시 글시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2(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o 점포의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이나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ㅇ 당사의 사정이나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o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o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 사유	부담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 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기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기맹본부 부담액을 기맹점사업자에 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에 기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 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 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 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 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7 8점의 운영한 시모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 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 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1522-3831)

#### 4. 신용 제공 등 내역

ㅇ 당사는 [복정동야시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가맹점 오픈시		오픈일로부터 1년	오픈 시 500만원	
오픈지원	조기안정화를 위한	신규매장 오픈	오는 글도구나 1년 안	상당의 장비 및	
	자금지원		긴	마케팅 지원	

ㅇ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환경, 경영상황 등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ㅇ 당사는 [복정동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필수
교육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집단강의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교육
갱신	기존의 가맹계약과 변경된 내용	실습교육	가맹계약 갱신 이전까지	필수
교육	및 재계약기간 내에 변경될 내용	집단강의	이수하여야 함	교육
운영	서비스 제공,	실습교육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	필수
교육	매출 증대 방법	집단강의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교육
특별	신제품 교육, 점주 교육, 영업 방침,	실습교육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필수
교육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 교육	집단강의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교육

<sup>※</sup>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일정이나 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복정동야시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업 교육	5일	2,200	2인 기준
갱신 교육	미정	실비	필요시/추정금액
운영 교육	미정	실비	필요시/추정금액
특별 교육	미정	실비	필요시/추정금액

- o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 o 신규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o 귀하가 신규 교육에서 정한 인원 외에 교육 인원을 추가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당사와 협의된 추가비용을 당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o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o 귀하가 기한 내 개업교육, 갱신교육, 운영교육,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មាភ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할 예정입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22-383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원·부재료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방기기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방집기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판매하는 메뉴 및 판매가격 >

상품 • 용역명	권장 가격(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직화 무뼈 불닭발	15,800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로제 직화 무뼈 불닭발	17,800		
직화 숯불 불막창	18,800		
직화 숯불 오돌뼈	16,800		
직화 볶음 닭갈비	20,800		
직화 간장 볶음찜닭	20,800		
정통 닭볶음탕	19,800		
LA소갈비찜	29,800		
로제 분모자 떡볶이	8,000		
매콤 분모자 떡볶이	7,000		
넓적 밀떡볶이	5,000		
궁중떡볶이	5,000		
갓성비 튀김세트	4,000		
야채튀김	2,000		
고구마튀김	2,000		
김말이튀김	2,000		
만두튀김	2,000		
반달빵	2,000		
포테이토 치즈볼	4,000		
치킨텐더	3,000		
넓적돈까스	7,000		
계란찜	3,000		
갈릭라이스	3,000		
날치알주먹밥	3,000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